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11월 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가. 제안이유

-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비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의 부적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현재 조직에 맞게 변경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조례에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의지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13조 삭제
 - 운영비 지원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지급할 바이지, 조례로서 별도의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함.
- 조례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 조직개편에 따른 생태관광부서의 업무가 관광개발부서로 이관되고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특정부서의

명칭을 관광개발부서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수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비과제로 선정된 부분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생태관광”을 “관광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창군의회 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1명
2. 관계공무원 4명
3. 관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